



문서번호	마을담당관-428
결재일자	2015.1.2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담 당	주민참여담당	마을담당관	부구청장	
김양근	박해열	代임정선	01/22 김병환	
협 조	기획예산과장	이용식		
	규제개혁담당	김용환		
	주무관	김하연		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



□ 주요 개정(안)

- ▶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
 - ▶ 사회적약자 참여 보장 규정 개정 (임의규정→강행규정)
 - ▶ 직제개편에 따른 간사 변경 (예산→주민참여예산)
-

마을담당관

「서울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」 일부 개정 조례 입법안 확정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」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(안)을 변경하여 확정하고자 함

I 관련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 일부 개정 계획
(부구청장 방침 : 기획예산과-15911, 2014.12.29.)
-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

II 추진사항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」 입법예고
 - 입법예고기간 : 14. 12. 31 ~ 15. 1. 20. (성북구보, 홈페이지 게재)
 - 의견제출자 : 성북구 인권위원회
 - 제출의견 및 조치내용

제출의견	조치내용(검토결과)
○ 제9조(위원회 구성)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」 제9조 5항 “성북구는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와 관련하여 성북구는 위원회 구성 시 <u>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수의 위원들을 할당하여 특정 사회적 약자군에서 위촉되도록 재권고함</u>	○ 수정반영 사회적 약자의 범위에 대해서 <u>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계층이 매우 광범위하여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반할 수 있기에, 위원회 구성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도록 종전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</u>

부패영향평가 결과 : 의견 있음

○ 제출의견 및 조치내용

제출의견	조치내용
위원회 위촉 시 청렴서약서 징구 규정 미 존재	2015년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위원신청서 접수받을 때 청렴서약 확인 내용 징구

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성별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Ⅲ 주요 개정내용

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시 사회적약자의 참여 규정 개정 (안 제9조제5항)

○ “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는 규정을
“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”로 개정

직제개편(‘15.1.1)에 따른 간사 변경 (안 제9조제6항)

○ “예산업무의 담당 부서장”을 “주민참여예산업무의 담당 부서장”으로 변경

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임기 개정 (안 제10조제1항)

○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임기를 “2년”에서 “1년”으로 축소

Ⅳ 향 후 일 정

성북구 조례·규칙심의회 상정 : 2015. 1. 22.

구의회 상정 : 2015. 1. 26.

공포·시행 : 2015. 2월 중

붙 임 1.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1부.

2.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. 끝.